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 전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

- 금융당국은 '08~09년 중 미분양 적체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따른 부동산 PF (Project Financing)의 대출 부실 확대에 대응하고자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.
  - 전 금융권 PF 사업장에 전수조사를 실시('08.9~12월)하는 한편, 자산관리공사 및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전 금융권의 부실채권 총 2.9조원을 매입('08.12~09.12월)함.
  - 이에 따라 금융권 전체는 연체율이 다소 회복('09.3월말 6.69 → 12월말 6.37)되고 확대되었던 대출규모도 점차 축소('09.3월말 83.7조원 → 12월말 82.4조원)됨.
  
- 반면, 최근 부동산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기존 PF 채권의 부실 우려가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PF 대출 확대, PF ABCP(자산담보부 기업어음) 발행 증가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양상임.
  -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혜택이 끝나고 시중 실세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건설사들의 재정상태가 위험한 수위를 보임.
  -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경우 건설사들이 공사대금을 담보로 해 급전으로 빌리는 브릿지론의 대출 비중이 높아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임.
  
- 이에 금융당국은 과거와 같이 부동산 경기 등락에 따라 PF 대출 및 ABCP의 쏠림과 부실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축은행권 및 여타 업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PF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임.
  - 저축은행의 경우 FP 대출이 총대출금의 30%를 넘을 수 없는 이른바 '30%룰'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보험사는 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을 은행 수준, 증권·여전·종금은 저축은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.
  - 또한 금융회사가 발행을 중개하거나 보유하는 PF ABCP의 예탁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상장건설사의 경우에는 PF 보증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시 공시해야 함.

(부동산 PF 대출 및 PF ABCP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추진,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외, 3/2)